KB스타 전세자금대출(갈아타기)(HF_한국주택금융공사)



대출자격
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에 참여하는 타 금융기관의 '한국주택금 융공사(HF)' 전세자금 대출을 당행으로 전액 대환(차주 보 유 전세자금대출이 1건인 경우만 가능) 신청하고, '한국주 택금융공사'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 - 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*한 고객
 - *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계산
 - 2.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고객
 - 3.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
 - * 이내인 경우
 -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취득(상속제외)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한 주택으로서,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. [※실수요 예외인정 없음]
 - 4.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(CSS)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 개
 - 5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
 - (가)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
 - (나)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 증(연말정산용)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
 - (다) 무소득자(무직자)
 - 6.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 - ·임대인이 '공공주택사업자' 또는 '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 자'인 경우 쌍방계약도 가능
 - *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: ㈜부영주택, ㈜동광주택, ㈜우남건설, 제일건설㈜, 지에스건설㈜
 - 7.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[※배우

자 소득합산 불가]

-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대출대상에서 제외 한다.
 - (1)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타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(예 :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)
 - (2)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에 의한 계약 인 경우
 - (3)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
 - (4) 임대인이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
 - (5)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
 - (6)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평가기관을 통해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대출 신청인 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
 - (7)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
 - (8) 규제대상아파트 보유자로서 실수요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(9) 증액 금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잔금일 이후 신청한 갱 신계약으로서 「DSR 적용대상」에 해당하는 경우
 - (10)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결과 추가 확인사항 또 는 심층 심사 대상자인 경우
 - (11)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
 - (12) 배우자가 분양권(입주권)을 보유한 경우

대출한도

-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소 5백만원 이상 ~ 최대 2억 2천 2백만원 이내
 - 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 능금액에 따름
 - 「대출이동시스템」 준용시에는 아래 요건을 추가적으로 따르다
 - (1)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- ·타행대출 보유 잔액과 동일금액(원단위까지 동일해야 함) ※ 대출잔액의 원금만 대환 가능하며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고객 부담
 - (2)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 시
 - ·"Min(보증기관 보증한도, 기존대출잔액+보증금 증액분)" 범위 내에서 약정 가능

대출기간

- 대출기간: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산정하며,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만기일 이내로 한다.
 (기한연장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)
- 대출이동시스템 준용시 아래 요건에 추가적으로 따른다.
 (1)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- ·기존대출 만기일과 신규대출 만기일을 동일 날짜로 지정 (2)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 시
 - ·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일단위
- 상환방법 : 일시상환

전세자금대출 | 스타뱅킹신청

상품안내

상품특징

•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비대면 전용 전세대출상품

대출신청자격
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에 참여하는 타 금융기관의 '한국주택금융공사(HF)' 전세자금 대출을 당행으로 전액 대환(차주 보유 전세자금대출이 1건인 경우만 가능) 신청하고, '한국주택금융 공사'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 - 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*한 고객
 - *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계산
 - 2.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고객
 - 3.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* 이내인 경우
 -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취득(상속제외)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한 주택으로서,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. [※실수요 예외인정 없음]
 - 4.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(CSS)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
 - 5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
 - (가)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
 - (나)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
 - (다) 무소득자(무직자)
 - 6.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 - ·임대인이 '공공주택사업자' 또는 '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'인 경우 쌍방계약도 가능
 - *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: ㈜부영주택, ㈜동광주택, ㈜우남건설, 제일건설㈜, 지에스

건설(주)

- 7.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[※배우자 소득합산 불가]
-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(1)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타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(예 :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)
 - (2)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
 - (3)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
 - (4) 임대인이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
 - (5)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
 - (6)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평가기관을 통해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대출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
 - (7)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
 - (8) 규제대상아파트 보유자로서 실수요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(9) 증액 금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잔금일 이후 신청한 갱신계약으로서「DSR 적용대상」에 해당하는 경우
 - (10)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결과 추가 확인사항 또는 심층 심사 대상자인 경우
 - (11)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
 - (12) 배우자가 분양권(입주권)을 보유한 경우

대출금액

- 입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소 5백만원 이상 ~ 최대 2억 2천 2백만원 이내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, 준용시에는 아래 요건을 추가적으로 따른다.
- (1)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- ·타행대출 보유 잔액과 동일금액(원단위까지 동일해야 함)
- ※ 대출잔액의 원금만 대환 가능하며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고객 부담
- (2)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 시
- ·"Min(보증기관 보증한도, 기존대출잔액+보증금 증액분)" 범위 내에서 약정 가능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• 대출기간 :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산정하며,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만기일 이내로 한다.

(기한연장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)

- 대출이동시스템 준용시 아래 요건에 추가적으로 따른다.
 - (1)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- ·기존대출 만기일과 신규대출 만기일을 동일 날짜로 지정
 - (2)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 시
 - ·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일단위
- 상환방법 : 일시상환

대출대상주택

- 아파트(주상복합아파트 포함)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(주거용)오피스텔로 하며, 기존대출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물건과 동일한 물건지여야 한다.
 - ※ 단독, 다가구 미운영
 - ※ 전세(예정)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(압류, 가압류, 경매 등)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

대출신청시기

- *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- ·기존대출 잔여기간 6개월 + 15영업일 이상 남은 시점

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시·기존대출 대출만기일 전 2개월 ~ 15영업일 이내

대출실행(지급) 시기

● 대출실행 : 영업일 오후 16:00이전

금리 및 이율

대출금리

- (1) 기준금리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잔액기준 COFIX」를 적용하며,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가 고시하는 「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」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합니다. 신잔액기준 COFIX와 금융채금리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.
 - (2) 가산금리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.
 - (3) 우대금리
 -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: 미운영
 -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(연 0.2%p),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(연 0.3%p)
 - ※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,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.
 - (4) 최종금리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·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조기상환수수료

- 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(0.5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최장 3년까지 부과)
 - 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9%) 적용
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에 관한 사항

- ® 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
 -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*)
 *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 - 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 - 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 - 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: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-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: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 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- 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 - 상기 '② 항'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.

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이용아내

담보

*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

부대비용

-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 인지세: 「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
대출금액	5천만원 이 하	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~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 (각각 3만5천 원)	15만원 (각각 7만5천 원)	35만원 (각각 17만5천 원)

- ② 보증료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
- 임차보증금의 0.02% ~0.4%
- ※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보증료는 1년 단위(또는 일시납)로 고객이 부담(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)
- 대출 상환시,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

대출상환 관련 안내

- 이자 계산 방법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워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
 - ※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(1) 일시상환대출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
 - (2) 원리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
 - (3) 원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.
 - (4) 할부금고정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
 - (5) 혼합상환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
 - (6) 통장자동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- 휴일 대출 상환
 -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기한연장 관련 안내

만기일로부터 12영업일 전까지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.
 ※단,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하다.

(1) 외국인/재외국민 차주

- (2) 당행 수신계좌 미보유 차주
- (3) 신용관리대상자 차주
- 기한연장 기간 : 1개월 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기한연장 가능하며,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내로 함. (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)
- 적용금리 : 당초대출의 금리체계 적용
- '주택금융신용보증 잔액이 있는 보증부 대출'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기한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은 불가하다.
 - (1) 기한연장 시(배우자 포함)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
 - (2) 2020.07.10이후 규제대상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 - (3) 당초 세대주가 임차인(채무자)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, 전세계약 만료 후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를 계약갱신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
 - (4) 기한연장 시 피보증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마친 경우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내용(임차보증금, 대항력 등)이 적정한 경우
 - (5)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(전세보증금 반환보증) 이행청구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% (1), (2)의 예외사항으로 연장하는 경우, 영업점에서 기한연장 가능하다.
- 영업점에서 기한연장시에는 해당기준을 따른다.

상품가입채널

* KB스타뱅킹

※ KB스타뱅킹 접속경로: 뱅킹 > 상품가입 > 대출 > 대출갈아타기 > 전월세 > 갈아탈 대출 조건 알아보기

- 대출신청시간: 영업일 09:00 ~ 21:50 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- 대출신청기간
 - ·(일반) 기존대출 잔여기간 6개월 + 15영업일 이상 남은 시점
 - ·(갱신) 기존대출 대출만기일 전 2개월 ~ 15영업일 이내
- 대출실행: 영업일 오후 16:00 이전

대출계약철회권

-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 영업점(콜센터 포함), 모바일 앱,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*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위법계약해지권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유의사항 및 기타

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

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
 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

•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『일반신 용정보 관리규약』에 따라 "연체정보 등으로"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고객께서 알아두실 사 항

-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 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 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,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,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, 금융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,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(P)(비대면가계여신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6049-106호(2025.01.06)]

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구분	변경전	변경후	기존고객 적용여부
대출신청자격 (2024.09.3 0)	- 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고객	- 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 *한 고객 *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 증금 계산	미적용
중도상환수수 료 (2025.01.1 3)	"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 (0.6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%) 적용"	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 환원금 × 수수료율(0.5 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 간(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 수료율(0.79%) 적용	미적용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 가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 * 2025.01.13~2026.06.30

필요서류

- * (1)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
- (2) 구 임대차(전세)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)
- (3)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(지급사실의 확인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)
- (4) 대상목적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분)
- (5)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- * (6) 신청인 자격확인서류
 - (가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또는 등 (근로자의 경우)
 - (나) 재직증명서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능) (근로자의 경우)
 - (다)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(근로자 이외의 경우)
 - (라) 소득확인증명서(재형저축가입용) (필요시)
 - (마) 사실증명원(본인 무소득 입증 시)
- (7) 기타 필요서류: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, 금융거래확인서* 및 분양계약서 (분양권 잔금대출 확인시) 등
 - * 발급은행 해당지점에 발급사실, 해당내용을 확인
 - ※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